

21세기 조경교육 방향

오충현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조경교육이 시작된지 벌써 30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제가 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입학한 것이 1986년인데, 그후로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조경계에서는 후배이고 후학이라는 생각만 해왔는데, 이제는 제가 전공한 학문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신 발표내용을 통해 여러 가지를 느꼈지만 특히 우리나라 조경학 전공자의 수가 과다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 전체의 조경학 전공학생 수가 3,000명이고 일본이 1,500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5,000명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학생수가 어떤 과정을 통해 졸업되었는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조경학이라는 학문이 매우 전문화되고, 전공 내부에서의 직업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이공분야 인력의 수급 판단에 대한 교육정책의 큰 잘못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세기 조경 교육의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조경 전공자들의 공직 진출과 조경관련법규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왔던 조경직제 신설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조경분야의 의지를 결집하는데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조경직제가 신설되었다면 더욱 좋겠지만 현재의 법체계안에서도 조경 전공자의 공직진출은 과거에 비해 넓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진출한 선배층이 부족하여 조경학 전공자들에게 공직이란 여전히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회전반의 조경인력의 증가와 조경업의 발달과는 달리 공직 분야에서의 조경인력은 아직은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서울시에서 조경분야에 근

무하는 정규 공무원 인력은 약 350명(2003. 10. 기준)인데 이중 학부과정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시에 들어온 인력은 약 15명(약 4.2%)에 불과합니다. 또한 시에 들어온 후 산업대학 위탁과정 등을 통해 조경을 전공한 인력이 약 20명(5.7%), 조경이외의 학문을 전공한 후에 조경학을 대학원 과정에서 전공한 인력이 약 20명(5.7%)으로서 전체인력의 약 15.6%가 정규 대학과정에서 조경을 전공한 후 해당분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조경학에 대한 과목이 증가하고 있고 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조경학 전공자의 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이 수치는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며, 본인이 주변의 도움을 통해 파악한 자료임). 물론 원예학이나 산림자원학 등과 같이 조경 관련분야의 전공자들이나 조경관련 자격 등을 소유한 직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그 비율은 훨씬 증가하겠지만, 이 자료는 순수하게 대학 및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전공한 인력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서울시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매년 뽑는 공무원 인력중 조경 전공자의 합격비율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조경전공자들이 전공을 살려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일반임업, 도시계획 등과 같이 소수직렬에 해당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재학중 공직분야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학습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서울시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조경을 주로 담당하는 일반임업 분야의 합격자들중에 산림자원이나 원예 등과 같은 관련 분야 전공자 이외에도 어문계열, 경상계열 등과 같이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전공한 합격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조경학 전공자들에게 공직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정보제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서의 조경관련 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

리고자 합니다. 두 분 교수님의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많은 대학 및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조경관련법규, 정책론, 환경법규 등에 대한 법규교육과정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경관련 법규는 단순히 법규과목만으로만 시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경계획·도시계획, 환경계획, 식재계획, 조경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함께 교육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경 전공자가 사회에 진출하여 이 분야에 대한 진정한 전문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 대한 해박한 지식 및 법규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조경계획 교육시 토지의 속성에 대한 이해를 사회환경·자연환경·인문환경 이외에도 관련법규까지를 포함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 21세기 조경교육 방향에 대해 매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신 후 대안을 제시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하지만 이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